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민병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14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19

발 의 자 : 민병덕 · 김승원 · 김영배
한민수 · 이강일 · 전용기
박해철 · 최혁진 · 서영교
이수진 · 김문수 · 박 정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5·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등으로서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사람을 “5·18민주유공자”로 명시하고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교육·취업·의료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함.

그런데 5·18민주화운동 당시 5·18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국내·외에 알리는 데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은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로 포함하여 그에 따라 예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5·18민주화운동 당시 이를 국내·외에 알리는 데에 현저한

기여를 한 사람을 민주유공자에 포함시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타당한 예우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4호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5·18민주화운동특별공로자: 5·18민주화운동 당시 5·18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국내·외에 알리는 데에 현저하게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의결된 사람

제57조제3호 중 “제4조제3호에”를 “제4조제3호 및 제4호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적용 대상자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(이하 “5·18민주유공자”라 한다)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4조(적용 대상자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5·18민주화운동특별공로자:</u> <u>5·18민주화운동 당시 5·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국내·외에 알리는 데에 현저하게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의결된 사람</u>
제57조(회원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. 1. · 2. (생략) 3. 5·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의 회원: <u>제4조제3호에</u> 해당하는 사람	제57조(회원) -----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<u>제4조제3호 및 제4호에</u> ----- -----